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

액화석유가스용 강철 용기에 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의무 적용에 대한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령 제66호 [2024년]

전능하신 신의 은혜로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목적:

- a. 액화석유가스용 강철 용기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인간의 안전, 건강, 보호 및 환경기능의 보전을 보장하고, 액화석유가스 보관용 강철제 용기 산업의 경쟁력, 효율성 및 성능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사업 경쟁을 조성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용 강철 용기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의 의무 적용을 이미 규정하였음.
- b. 액화석유가스용 강철 용기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의무 적용에 대한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령 제47호/M-IND/PER/3/2012는 산업 표준화 분야의 정책을 더 이상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체할 필요가 있음.
- c. 위에 명시된 a목 및 b목의 고려사항 및 2022년 제2호 일자리 창출법에 관한 정부 규정을 법률로 확정하는 2023년 제6호 법률로 개정된 바 있는 2014년 제3호 산업법 제52조 1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보관용 강철제 용기에 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의 의무 적용에 대한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법:

1. 1945년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 제17조 제3항,
2. 행정각부법 제39호 [2008년](인도네시아 관보 제166호, 부록 제4916호 [2008년]) 및 행정각부법 제39호 [2008년]을 개정한 행정각부법 제61호 [2024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225호, 부록 제6994호 [2024년]),

3. 인도네시아 산업법 제3호 [2014년](인도네시아 관보 제4호, 부록 제5492호 [2014년])은 2022년 제2호 일자리 창출법에 관한 정부 규정을 법률로 확정하는 조항에 따라 2023년 제6호로 개정되었다.
(인도네시아 관보 제41호, 부록 제6856호 [2023년])
4.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 법률 제20호 [2014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216호, 부록 제5584호 [2014년])
5. 산업시설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정부령 제2호 [2017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9호, 부록 제6016호 [2017년])
6. 국가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체계에 관한 정부령 제34호 [2018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110호, 부록 제6225호 [2018년])
7. 산업 분야 조직에 대한 정부령 제28호 [2021년](인도네시아 관보 제38호, 부록 제6640호[2021년])은 2023년 정부령 제46호로 개정되었으며, 이 정부령은 산업 분야 조직 운영에 관한 정부령 제28호 [2021년]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다.
(인도네시아 관보 제119호, 부록 제6891호[2023년])
8. 산업부에 관한 대통령령 제167호 [2024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363호 [2024년])
9. 산업 표준화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제45호 [2022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1120호 [2022년])
10. 인도네시아 산업부 조직 및 직무 운영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제8호 [2023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384호 [2023년])

결정:

정의
액화석유가스용 강철제 용기에 관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의무 적용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제1장
총칙

제1조

이 장관령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인도네시아국가표준(SNI)이란,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분야의 사무를 관장하는 비부처 정부기관이 제정한 표준 규정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용 강철제 용기(강철제 LPG 용기)란, 액화석유가스용(BjTG)으로 제작된 압력 용기로서, 1.5킬로그램 이상 50킬로그램 이하의 규격을 가지며, 강철 판재, 강철 플레이트, 열간 압연 코일로 제작되고 벨브와 고무패킹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3. 사업자란, 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영토내에 설립 및 소재하거나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로서, 단독 또는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산업기업이란, 인도네시아 국내에 소재하며 액화석유가스용(LPG) 강철제 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를 말한다.
5. 해외 제조업자란, 액화석유가스용(LPG) 강철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산업 활동을 수행하며,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영토 외에 소재한 개인 또는 산업기업을 말한다.
6. 공식 대리인이란,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영토 내에 설립되어 소재하는 법인 형태의 사업체로서, 상표권을 보유한 해외 제조업자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회사 대리인이란,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영토 내에 설립되어 소재하는 법인 형태의 사업체로서, 상표권을 보유한 해외 사업자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SNI 인증서란,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SNI 의무적용 규정에 따라, 강철제 LPG 용기를 해당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할 수 있는 산업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자에게 제품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SNI 마크란, SNI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분야의 사무를 관장하는 비부처 정부기관이 정한 인증 표시를 말한다.

10. 인도네시아 표준산업분류(KBLI)란, 통계 분야의 정부 사무를 관장하는 비부처 정부 기관이 정한 산업 분류 코드를 말한다.
11. SNI 마크 사용 승인서(SPPT SNI)란, 산업부의 권한 있는 공무원이 발급한 SNI 마크 사용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12. “위탁 생산 계약” (Maklun)이란, 산업기업이 아닌 사업자 또는 해외 제조업자가 아닌 해외 사업자가 상표 소유자이자 제공자로서, 산업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자에게 자사의 상표를 사용하여 강철제 LPG 용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위탁 생산 형태의 협력 계약을 말한다.
13. 국가산업정보시스템(SIINas)이란, 기관, 인적 자원, 데이터베이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신망 등의 요소들이 상호 연계되어 통합된 절차 및 운영 체계로서, 산업 관련 데이터 및/또는 정보의 전달, 관리, 제공, 서비스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제품인증기관(LSPro)이란,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서, 산업용 재화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품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의무 적용되는 SNI 요건에 따라 SNI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15. 시험기관이란, 의무 적용되는 SNI 요건에 따라, 제품 샘플에 대한 품질 적합성 시험을 수행하는 인증된 기관을 말한다.
16. 국가인정위원회(KAN)란,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정을 담당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비정부 공공 기관을 말한다.
17. 사후관리(Surveilen)란, 적합성 선언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근거로 수행되는 적합성 평가의 체계적인 반복 절차를 말한다.
18. 산업표준 감독관(PPSI)이란, 산업 분야의 표준 적용 또는 의무 적용 이행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소속의 공무원을 말한다.
19. 장관이란, 산업 분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의장을 말한다.
20. 기관이란, 산업부 소속으로 고위 중간 관리급 단위 조직으로서, 산업 표준화에 관한 조정, 기획, 적용, 의무 적용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1. 기관장이란, 산업부 소속의 고위 중간 관리자로서, 산업표준화에 관한 조정, 기획, 적용, 의무 적용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2. 총국장이란 산업부 소속 고위 중간급 관리자로서 강철제 LPG 용기 제품 산업에 대한 지도, 육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제2장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SNI) 의무 적용의 범위

제2조

- (1)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해 SNI 1452:2011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 (2) 제(1)항에서 말하는 강철제 LPG 용기의 HS코드(관세 분류 번호)는 다음과 같다.
- a. ex. 7311.00.91
 - b. 7311.00.92, 그리고
 - c. ex. 7311.00.94
- (3) 제(2)항에 따른 강철제 LPG 용기는 국내 생산품 및/또는 수입품으로서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내에서 유통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 (1) 제2조에 따른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SNI 의무 적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NI 의무 적용을 예외로 한다.
- a. 기술적 특성상 동일 제품군에 속하더라도 별도의 표준이 적용되는 경우, 그 범위, 분류 및/또는 품질 요건이 의무화된 기준과 상이한 경우, 그리고
 - b. SNI 인증서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용 샘플로 사용되는 경우
- (2) 제(1)항 b호에 해당하는 강철제 LPG 용기는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4조

- (1) 제3조 (1)항 a호에 따른 강철제 LPG 용기의 적용 예외는 총국장이 발급한 확인서로 입증해야 한다.
- (2) 제3조 제(1)항 b호에 따른 강철제 LPG 용기의 적용 예외는, 장관이 지정한 제품인증기관 (LSPRO)이 발행한 샘플 채취 보고서 및 시험용 샘플 라벨로 입증해야 한다.

제5조

- (1) 인도네시아공화국 영토 내에서 강철제 LPG 용기를 제조, 수입 및/또는 유통하는 사업자는, 제2조에 따른 강철제 LPG 용기의 SNI 의무 적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 (3) 제(2)항에 언급된 제재가 형사처벌인 경우, 해당 형사처벌 외에도 SNI 인증서 및/또는 SNI 마크 사용 승인서(SPPT SNI)의 취소도 함께 이루어진다.
- (4) 제(3)항에 따른 SNI 인증서의 취소는 제품 인증 기관(LSPro)이 기관장의 권고에 따라 수행한다.
- (5) 제(3)항에 따른 SNI 마크 사용 승인서 (SPPT SNI)의 취소는 기관장이 직접 수행한다.

제3장
적합성 평가

제1부

총칙

제6조

- (1) 제2조에 따른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SNI 의무 적용의 이행은 제5형 인증 체계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통해 수행한다.
- (2) 제(1)항 a호에 언급된 5형 인증 시스템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수행한다.
 - a. ISO 9001:2015에 부합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용 및 생산 공정에 대한 심사 절차, 그리고
 - b. 제2조 제(1)항에 언급된 SNI의 요건에 따른 품질 적합성 시험
- (3) 제(2)항에 언급된 적합성 평가 결과는 SNI 인증서의 형태로 발급된다.

제7조

- (1) 제6조 제(2)항 a호에 따른 심사는 제품인증기관(LSPro)이 수행한다.
- (2) (1)항에 언급된 제품인증기관(LSPro)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제2조에 따른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SNI의 범위에 부합하는 국가인정위원회(KAN)의 인정을 받은 경우
 - b. 장관이 지정한 경우.
- (3) 제6조 제(2)항 b호의 품질 적합성 시험은 다음 기관이 수행한다.
 - a. 국내 시험기관, 또는
 - b. 국외 시험기관
- (4) 제(3)항 a호에서 언급한 국내 시험기관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제2조에 언급한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SNI의 적용 범위에 따라 국가인정위원회(KAN)의 인정을 받은 경우, 그리고

b. 장관이 지정한 경우.

- (5) 제(3)항 b호에 따른 국외 시험기관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국제 상호인정협약에 따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인정 기관으로부터 해당 분야에 적합한 인정을 받은 경우,
 - 시험기관이 소재한 국가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와 기술 규제 분야에 대해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리고
 - 장관이 지정한 경우.

제8조

- (1) 다음의 경우
- 제2조에서 언급한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SNI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KAN의 인정을 받은 제품인증기관(LSPro) 또는 시험기관이 아직 없으나, 유사한 범위에 대해 이미 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 제2조에서 언급한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SNI의 적용 범위에 부합하는 KAN의 인정을 받은 제품인증기관(LSPro) 또는 시험기관이 존재하나, 그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 장관은 유사한 범위에 대해 KAN의 인정을 받은 제품인증기관(LSPro) 및/또는 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제품인증기관(LSPro) 및/또는 시험기관은,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2조에서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SNI 범위에 부합하는 KAN의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9조

- (1) 제6조 제(3)항에서 언급한 SNI 인증서는 다음에 한하여 소지할 수 있다.
- 산업기업, 또는
 - 해외 제조업자
- (2) 제(1)항에 언급된 SNI인증서는 하나의 생산 시설 1개소당 1개의 산업 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자에게만 발급될 수 있다.
- (3) 제(2)항에 언급된 SNI 인증서에는 1개의 상표만 기재할 수 있다.
- (4) 제(3)항에 언급된 SNI 인증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다.
- (5) 위탁 생산 계약이 있는 경우, SNI 인증서는 각 위탁 계약 제공자별로 해당 위탁 계약을 받은 산업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자에게 발급된다.

제10조

제9조 제(1)항 a호에 따른 산업기업은 다음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KBLI 25120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 분야의 사업 허가를 보유할 것.
- b.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자사 상표를 보유할 것.
- c. 최소한 다음 각호의 생산 설비를 보유할 것
 - 1. 성형 설비
 - 2. 용접 설비
 - 3. 열처리 설비
 - 4. 표면 세정 설비
 - 5. 도장 설비
- d. 최소한 다음 각호의 시험 장비를 보유할 것
 - 1. 수압 시험장비
 - 2. 기밀(누수) 시험장비
- e.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을 것. 그리고
- f. 국가산업정보시스템(SIINas) 계정을 보유할 것

제11조

- (1) 제9조 제(1)항 b호의 해외 제조업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강철제 LPG 용기에 관한 산업 활동을 수행할 것
 - b.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자체 상표를 보유할 것
 - c. 최소한 다음 각호의 생산 설비를 보유할 것
 - 1. 성형 설비
 - 2. 용접 설비
 - 3. 열처리 설비
 - 4. 표면 세정 설비
 - 5. 도장 설비
 - d. 최소한 다음 각호의 시험 장비를 보유할 것
 - 1. 수압 시험장비
 - 2. 기밀(누수) 시험장비
 - e.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을 것. 그리고
 - f. 공식 대리인을 보유할 것.
- (2) 제(1)항 f호에 따른 공식 대리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해외 제조업자로부터 인도네시아공화국 영토 내에서 공식 대리인으로 지정되었을 것.
 - b. 해외 제조업자로부터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상표 사용 허가를 받고 해당 상표에 대해 책임을 질 것.
 - c. 공식 대리인이 소재한 동일 시군구 또는 인근 시군구에 창고를 보유하고 있을 것.

- d. 해외 제조업자가 생산한 강철제 LPG 용기의 수입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그리고
 - e. 국가산업정보시스템(SIINas) 계정을 보유할 것
- (3) 제(2)항에 언급된 공식 대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해야 한다.
- a. 하나의 해외 제조업자만을 대리할 것, 또는
 - b.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수의 해외 제조업자를 대리할 수 있다.
 1. 공식 대리인 및 다른 해외 제조업자의 모회사인 경우.
 2. 공식 대리인 및 다른 해외 제조업자와 동일한 모회사를 둔 자회사인 경우. 또는
 3. 공식 대리인의 자회사인 경우.
- (4) 제(3)항 b호 1목 및 2목에서 언급한 모회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강철제 LPG 용기 산업 분야의 사업 활동을 수행할 것. 그리고
 - b.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할 것.
- (5) 제(1)항에 언급한 해외 제조업자는 하나의 공식 대리인만을 지정할 수 있다.
- (6) 해외 제조업자가 SNI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공식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SNI 인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2조

- (1) 위탁 생산 계약(MAKLUN)이 있는 경우, 해당 상표에 대한 SNI 인증서는 위탁 생산 계약 대상인 산업 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자가 소유한다.
- (2) 제(1)항에서 언급된 위탁 생산 계약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다.
- a. 위탁 생산 계약 수혜자가 본인 상표에 대하여 유효한 SNI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그리고
 - b. 위탁 생산 계약 수혜자가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로부터 해당 상표로 강철제 LPG 용기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을 것.
- (3) 위탁 생산 계약의 제공자가 인도네시아공화국 영토 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위탁 계약 제공자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 내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회사 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제2부 인도네시아국가표준(SNI) 인증서 취득 절차

제13조

- (1) SNI 인증서 발급 신청 주체는 다음과 같다.
- a. 산업기업, 또는
 - b. 공식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는 해외 제조업자 신청은 SIINas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한다.

- (2) 산업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자가 두 개 이상의 생산시설을 보유한 경우, 산업기업 및 해외 제조업자는 공식 대리인을 통하여 각 생산시설 별로 SNI 인증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제14조

- (1) 제13조 제(1)항 a호에 따라 산업기업이 SNI 인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SIINas 사이트를 통해 다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a.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데이터를 입력할 것,
 - b. 적합성 평가를 신청할 SNI를 선택할 것,
 - c.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제품인증기관(LSPro)을 선택할 것,
 - d.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이 발급한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상표 인증서를 상표권 보유의 증빙자료로 첨부 (업로드)할 것, 그리고
 - e. 다음 자료를 포함한 기타 증빙서류를 업로드할 것.
 1. SIINas를 통해 출력되고 산업기업 대표자가 서명한 신청서
 2. 회사 설립 및 그 변경등기부 등본
 3. KBLI 25120에 해당하는 강철제 LPG 용기의 산업 활동을 위한 사업 허가증
 4. SNI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5. SNI 인증서 및 SNI 마크 사용 승인서(SPPT SNI)를 취득하기 전까지 강철제 LPG 용기를 유통·판매·양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산업기업 대표가 서명하고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인지를 부착한 서약서
 6. 생산 공정 흐름도
 7. 강철제 LPG 용기의 상표, 유형, 구조를 제품 정보
 8. 생산설비 목록
 9. 시험장비 목록
 10.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의 품질 관리 항목 목록
 11. SNI 마크 부착 예시 이미지
 12. ISO 9001:2015기준에 따른 문서화된 정보 목록
 13. 조직도, 그리고
 14. 사업 프로세스
- (2) 산업기업이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 상표 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SNI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상표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1)항 d호에 따른 상표 인증서를 상표 등록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 (3) 산업기업이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사업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SNI 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1)항 e호 4목에 따른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대신, ISO 9001:2015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 (4) 산업기업이 제(2)항에 언급된 상표 등록 증명서 및/또는 제(3)항에 언급된 품질경영시스템 적용 서약서를 첨부하여 SNI 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산업기업은 제2차 사후관리(Surveilen)가 실시되는 시점까지 상표 인증서 및/또는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제15조

- (1) 제13조 제(1)항 b호에 언급된 공식 대리인이 SNI 인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SIINas 웹사이트를 통해 다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a.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데이터를 입력할 것,
 - b. 적합성 평가를 신청할 SNI를 선택할 것,
 - c.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제품인증기관(LSPro)을 선택할 것,
 - d.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이 발급한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상표 인증서를 상표권 보유의 증빙자료로 첨부(업로드)할 것, 그리고
 - e. 다음 자료를 포함한 기타 증빙서류를 업로드할 것:
 1. SIINas를 통해 출력되고 공식 대리인 대표자가 서명한 신청서
 2. 해외 제조업자의 설립등기 및 그 변경사항 사본
 3. 해외 제조업자의 강철제 LPG 용기 산업 활동을 위한 사업 허가증(KBLI 25120에 해당) 또는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
 4. SNI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5. SNI 인증서 및 SNI 마크 사용 승인서(SPPT SNI)를 취득하기 전까지 강철제 LPG 용기를 유통·판매·양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식 대리인이 서명하고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인지를 부착한 서약서
 6. 생산 공정 흐름도

7. 강철제 LPG 용기 제품 유형, 상표, 구조를 포함한 제품 정보
 8. 생산설비 목록
 9. 시험장비 목록
 10.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의 품질 관리 항목 목록
 11. SNI 마크 부착 예시 이미지
 12. ISO 9001:2015 기준에 따른 문서화된 정보 목록
 13. 조직도, 그리고
 14. 사업 프로세스
- (2) 제(1)항 e호 제3목 및 제4목의 서류는 다음의 요건에 따라 2부를 첨부(업로드)해야 한다.
- a. 산업·경제 분야의 외교관 또는 현지 주재 인도네시아 영사관이 공증한 원본 1부
 - b. 공인번역사가 번역한 인도네시아어 번역본 1부
- (3) 제(1)항 e호 제6목, 제7목, 제8목, 제9목, 제10목, 제12목, 제13목 및 제14목의 서류는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해야 한다.
- (4) 제(1)항에 언급된 서류 외에도, 공식 대리인은 다음 법적 자격 증빙 서류를 첨부(업로드)해야 한다.
- a. 회사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사본
 - b. 사업 허가증
 - c. 인도네시아 영토 내 공증인이 작성한 공식 대리인 임명에 대한 공증 문서
 - d. 해외 제조업자가 보유한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라이선스를 공식 대리인에게 부여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 등록된 계약서.
 - e. 해외 제조업자가 보유한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등록 증명서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 등록된 증명서. 그리고
 - f. 공식 대리인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군에 창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
- (5) 문서의 공증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 a호에 명시된 현지 국가의 산업·경제 분야의 외교관 또는 인도네시아 영사관은 공증 대상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6) 제(1)항 d호에 언급된 상표가 공식 대리인의 명의로 등록된 경우, 제(4)항 d호에 따른 상표 라이선스 계약서는 다음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 공식 대리인 명의의 상표 인증서, 그리고
 - 해외 제조업자가 공식 대리인의 소유이거나 그 자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7) 제(1)항에 언급된 공식 대리인이 하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제(4)항 f호에 따른 공식 대리인의 소재지는 사무소 주소 또는 서신 수령 주소 등 사업 허가증에 기재된 대표 주소로 간주한다.

제16조

- (1) 산업기업이 위탁 생산 계약(Maklun)에 따라 SNI 인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제14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도 다음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가 국내 사업자인 경우
 -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의 회사 설립 및 변경등기부 등본
 -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의 사업 허가증
 -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이 발급한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의 상표 인증서
 -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가 수혜자에게 부여한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 등록된 계약서
 - 상기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등록증명서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 등록된 증명서
 - SNI 인증서 및 SNI 마크 사용 승인서(SPPT SNI)를 취득하기 전까지 강철제 LPG 용기를 유통·판매·양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인 산업기업의 대표가 서명하고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인지를 부착한 서약서
 - 위탁 생산 계약 수혜자인 산업기업이 보유한 유효한 SNI 인증서
 -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가 해외 제조업자가 아닌 해외 사업자인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회사 설립 등기 및 변경등기 사본
2. 사업 허가증 또는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
3.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이 발급한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 상표 인증서
4. 상표 제공자가 수혜자에게 부여한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 등록된 계약서
5. 상기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등록 증명서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 등록된 증명서
6. SNI 인증서 및 SNI 마크 사용 승인서(SPPT SNI)를 취득하기 전까지 강철제 LPG 용기를 유통·판매·양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인 공식 대리인 대표가 서명하고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인지를 부착한 서약서
7. 위탁 생산 계약 수혜자인 산업기업이 보유한 유효한 SNI 인증서
8.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의 공식 대리인에 대한 법적 자격 증빙 서류:
 - a) 회사 설립 등기 및 변경 등기 사본
 - b) 사업 허가증
 - c) 인도네시아 내 공증인이 작성한 공식 대리인 임명에 관한 공증 문서
 - d) 해외 사업자가 부여한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 등록된 계약서
 - e) 상기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등록 증명서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 등록된 증명서

- (2) 제(1)항 b호 제1목 및 제2목에 따른 서류는 다음의 요건에 따라 2부씩 제출해야 한다.
- a. 산업·경제 분야 외교관 또는 인도네시아 영사관이 공증한 원본 1부
 - b. 공인 번역사가 번역한 인도네시아어 번역본 1부
- (3) 제(1)항 a호에 따른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인 국내 사업자는 SIINas 계정을 보유해야 한다.
- (4) 제(1)항 b호 제2목에 따른 해외 사업자의 기업 대리인은 SIINas 계정을 보유해야 한다.

제17조

- (1) 해외 제조업자가 위탁 생산 계약에 따라 SNI 인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제15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도, 해외 제조업자는 공식 대리인을 통해 다음의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a.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가 산업기업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사본
 2.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의 사업 허가증
 3.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이 발급한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 상표 인증서
 4. 상표 제공자가 수혜자에게 부여한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 등록된 계약서
 5. 상기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등록 증명서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 등록된 증명서
 6. SNI 인증서 및 SNI 마크 사용 승인서(SPPT SNI)를 취득하기 전까지 강철제 LPG 용기 유통·판매·양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 대표가 서명하고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인지를 부착한 서약서
 7. 위탁 생산 계약 수혜자인 해외 제조업자가 보유한 유효한 SNI 인증서
 - b.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가 해외 제조업자가 아닌 다른 해외 사업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사본
2.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의 사업허가증 또는 현지 당국의 확인서
3.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이 발급한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 상표 인증서
4. 상표 제공자가 수혜자에게 부여한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 등록된 계약서
5. 상기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등록 증명서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 등록된 증명서
6. SNI 인증서 및 SNI 마크 사용 승인서(SPPT SNI)를 취득하기 전까지 강철제 LPG 용기를 유통·판매·양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식 대리인 대표가 서명하고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인지를 부착한 서약서
7. 위탁 생산 계약 수혜자인 해외 제조업자가 보유한 유효한 SNI 인증서
8.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의 회사 대리인에 대한 법적 자격 증빙서류:
 - a) 회사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사본
 - b) 사업 허가증 사본
 - c) 인도네시아 영토 내 공증인이 작성한 공식 대리인 임명에 대한 공증문서
 - d) 해외 사업자가 회사 대리인에게 부여한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 등록된 계약서
 - e) 상기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등록 증명서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 등록된 증명서

- (2) 제(1)항 b호 제1목 및 제2목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의 요건에 따라 2부를 제출해야 한다.
- 산업·경제 분야 외교관 또는 인도네시아 영사관이 공증한 원본 1부
 - 공인 번역사가 번역한 인도네시아어 번역본 1부
- (3) 제(1)항 a호에 따른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는 SIINas 계정을 보유해야 한다.
- (4) 제(1)항 b호에 따른 해외 사업자의 회사 대리인은 SIINas 계정을 보유해야 한다.

제18조

제14조 제(1)항 e호 제4목 및 제15조 제(1)항 e호 제4목에서 언급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는 다음 기관에서 발급되어야 한다.

- KAN에 의해 인증받은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또는
- 국제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인정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품질관리시스템 인증기관

제19조

- (1) 기관장은 산업기업 또는 공식 대리인이 제출한 신청서 기입 사항과 첨부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토한다.
- (2) 기관장은 제(1)항에 언급된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 표준화의 수립, 시행 및 적용을 담당하는 부서에 그 업무를 위임한다.
- (3) 제(1)항에 언급된 검토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3영업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20조

- (1) 제19조에 따른 검토 결과 누락 또는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기관장은 SIINas를 통해 산업기업 또는 공식 대리인에게 보완 및 소명을 요구한다.
- (2) 산업기업 또는 공식 대리인은 기관장의 요청일로부터 최대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보완 및 소명해야 한다.
- (3) 제(2)항에 명시한 요청기한 내에 산업기업 또는 공식대리인이 보완 또는 소명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SNI 인증 신청은 무효로 간주한다.

제21조

- (1) SNI 신청서 기입사항 및 첨부서류가 완전하고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관장은 이를 SIINas를 통해 LSPro에 전달한다.
- (2) 제(1)항에 명시된 LSPro가 적합성 평가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산업기업 또는 공식 대리인은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 (1) LSPro가 적합성 평가를 완료한 경우, 적합성 평가 결과를 SIINas를 통해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 (2) 제(1)항에 명시된 적합성 평가 결과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합성 심사 실시일
 2. 인증 체계 및 적합성 심사일
 3. 심사자 이름
 4. 샘플 채취 담당자 이름
 5. 적정성 및 적합성 심사 결과
 6. 강철제 LPG 용기의 종류, 상표, 모델을 포함한 구조 설명
 7. 사용된 시험기관
 8. 발급 예정 SNI 인증서 초안 및 그 부속서
 9. 시험결과 보고서로서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 a) SNI 번호 및 제목
 - b) 시험 샘플 수령일
 - c) 시험 실시일
 - d) 시험 결과 보고서 번호 및 일자, 그리고
 - e) 시험 결과

제23조

- (1) 기관장은 LSPro가 제출한 적합성 평가 결과에 대해 검토를 실시한다.
- (2) 제(1)항에 언급된 검토는 LSPro가 수행한 적합성 평가 절차가 본 장관령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토를 포함한다.
- (3) 제(2)항에 언급된 검토는 LSPro가 적합성 평가 결과를 제출한 날로부터 최대 5영업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 (4) 제(2)항에 언급된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장은 산업 표준화의 수립, 시행 및 적용을 담당하는 부서에 업무를 위임한다.
- (5) 제(1)항에 언급된 검토 결과 부적합(불일치) 사항이 발견된 경우, 기관장은 LSPro에게 소명을 요구한다.

- (6) 제(5)항에 언급된 기관장의 요청은 SIINas를 통해 전자적으로 통보된다.

제24조

- (1) LSPro는 소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5영업일 이내에 소명을 제출해야 한다.
-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LSPro가 소명을 제(1)항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 LSPro가 소명을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본 장관령에 따른 적합성 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기관장은 해당 적합성 평가를 승인하지 않으며, SNI 인증서 발급 신청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된다.
-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검토 결과 적합성 평가 절차가 본 장관령에 부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 LSPro가 부적합 사항을 개선(시정)한 경우,
- 기관장은 LSPro가 수행한 적합성 평가에 대해 검증을 승인한다.

제25조

- (1) 제24조 제(3)항에 언급된 적합성 평가의 검토 결과는 전자 마크 형태로 제공된다.
- (2) 제(1)항에 언급된 전자 마크에는 SIINas 내에서 인증서 정보로 연결되는 전자 링크가 포함된다.
- (3) 제(1)항에 언급된 전자 마크는 SIINas를 통해 전자적으로 LSPro에 송부된다.

제26조

- (1) 제22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 결과 및 제23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LSPro는 제25조 제(3)항에 언급된 전자 마크를 수령한 날로부터 최대 5영업일 이내에 SNI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 (2) 제(1)항에 언급된 SNI 인증서에는 제25조 제(1)항에서 명시한 전자 마크가 부착되어야 한다.
- (3) 제(1)항에 언급된 LSPro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전자 마크가 부착된 SNI 인증서를 산업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자에게 송부한다. 그리고
 - 전자 마크가 부착된 SNI 인증서를 SIINas 시스템에 업로드한다.
- (4) 제(2)항에 언급된 SNI 인증서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a. 산업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자의 명칭 및 주소
 - b. 공장 소재지
 - c. 상표
 - d. 강철제 LPG 용기의 유형 및 구조 종류
 - e. SNI 번호 및 제목
 - f. SNI 인증서 발급일
 - g. SNI 인증서의 유효기간
- (5) 제(4)항의 정보 외에, 수입산 강철제 LPG 용기의 SNI 인증서에는 공식 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그리고 공식 대리인의 창고 소재지가 추가로 기재되어야 하며, 공식 대리인이 수입자가 아닐 경우 해당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 (6) 위탁 생산 계약이 있는 경우,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정보 외에 도 다음의 정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 a. 위탁 생산 계약을 제공한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b. 위탁 생산 계약을 제공한 해외 사업자의 회사 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제27조

- (1) SNI 인증서 취득 절차는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SNI 인증 체계에 따른다.
- (2) 제(1)항에 언급된 강철제 LPG 용기 SNI 인증 체계는 본 장관령에 첨부하여 명시하며, 해당 첨부는 본 장관령의 불가분의 일부인 별지1에 규정되어 있다.

제3부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마크(SNI 마크) 사용 승인

제28조

- (1) 제2조에 따라 SNI 요건을 충족하고 SNI 인증서를 취득한 강철제 LPG 용기에는 SNI 마크와 전자 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 (2) 제(1)항의 SNI 마크 및 전자 마크의 부착은 기관장의 SNI 마크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
- (3) 제(2)항의 SNI 마크 사용 승인은 SPPT SNI(인도네시아 국가표준 마크 사용 승인서)의 형태로 부여된다.

제29조

- (1) 제28조 제(3)항에 언급된 SPPT SNI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발급된다.
- a) 산업기업, 또는
 - b) 공식 대리인
- (2) 위탁 생산 계약이 있는 경우, 제28조 제(3)항에 언급된 SPPT SNI는 다음 대상에게 발급된다.
- a. 위탁 생산 계약을 제공한 사업자, 또는
 - b. 위탁 생산 계약을 제공한 해외 사업자의 회사 대리인
- (3)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SPPT SNI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 (4) SNI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 SPPT SNI는 매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제30조

- (1) 산업기업 또는 공식 대리인은 제29조 제(1)항에 따라 SPPT SNI를 발급 받기 위해 기관장에게 SPPT SNI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 (2) 제(1)항에 언급된 SPPT SNI 발급 신청은 SIINas를 통해 전자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3) 제(1)항에 언급된 SPPT SNI 발급 신청 시, 신청인은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 SIINas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데이터를 입력할 것
 - 다음 해당 서류를 업로드할 것:
 - 산업기업의 경우, 생산 능력, 가동률, 생산 계획, 전년도 생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 공식 대리인의 경우, 해외 제조업자의 생산 능력 증빙, 수입 계획, 최근 연간 수입 실적에 대한 자료
- (4) 제(3)항 b호 제1목 및 제2목에 따른 전년도 생산 실적 또는 최근 연간 수입 실적 증빙은 최초로 SPPT SNI 발급을 신청하는 산업기업 또는 공식 대리인의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한다.

제31조

- (1) 위탁 생산 계약이 있는 경우, 제29조 제(2)항에 따라 위탁 생산 계약을 제공한 사업자, 위탁 생산 계약을 제공한 해외 사업자의 공식 대리인은 SPPT SNI 발급을 위해 기관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 (2) 제(1)항에 언급된 SPPT SNI 발급 신청은 SIINas를 통해 전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3) 제(1)항에 언급된 SPPT SNI 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SPPT SNI 신청인은 다음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SIINas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데이터를 입력할 것
 -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업로드할 것:
 - 위탁 생산 계약에 따라 생산 예정인 제품 수량에 대한 증빙, 그리고
 - 위탁 생산 계약의 수혜자가 산업기업인 경우 위탁 생산 계약을 통해 전년도에 생산된 실적 증빙, 또는 수혜자가 해외 제조업자인 경우 전년도 연간 수입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 (4) 제(3)항 b호 제2목에 따른 전년도 생산 실적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 실적 증빙은 최초로 SPPT SNI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출을 면제 한다.

제32조

- (1) 기관장은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SPPT SNI 발급 신청에 대해 평가를 수행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평가 수행을 위해 기관장은 평가팀을 구성한다.
(3) 제(2)항에 언급된 팀은 최소한 다음 요소를 반영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a. 기관 소속, 그리고
b. 본청 소속

제33조

- (1) 제32조에 따른 평가 수행 시, 평가팀은 다음 절차를 수행한다.
a. 신청서 기재 내용과 첨부 서류 간의 일치 여부 확인, 그리고
b. 신청된 SNI 마크 사용 신청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2)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a. 신청서 기재 내용과 첨부 서류 간의 불일치가 발견된 경우, 및/
또는
b. 제출된 SNI 마크 사용 신청 내용이 부족하거나 첨부 서류와 부합
하지 않는 경우
평가팀은 SPPT SNI 신청인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SPPT SNI 신청자는 소명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명을 제출해야 한다.
(4) 평가팀은 SPPT SNI 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5영업일 이내에 평가 결과 보고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4조

- (1)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라 SPPT SNI 신청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a. 제33조 제(3)항에 언급된 기간 내에 소명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b. SPPT SNI 발급 신청에 대한 부적합 사항 및/또는 부족 사항을 시
정하지 않은 경우
기관장은 SPPT SNI 발급 신청을 거부한다.

- (2) 제(1)항에 언급된 SPPT SNI 발급 신청의 거부는 SIINas를 통해 전자적으로 통보된다.

제35조

- (1)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SPPT SNI 마크 사용 승인 신청이 적합하고, 완전하며, 정확하다고 인정된 경우, 또는
 - SPPT SNI 신청인이 부적합 사항 및/또는 부적정 사항을 시정한 경우
- 기관장은 평가 결과 보고서를 팀으로부터 접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5일(영업일) 이내에 SPPT SNI를 발급한다.
- (2) 제(1)항에 언급된 SPPT SNI의 발급은 전자 마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3) 제(2)항에 언급된 전자 마크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전자 링크가 첨부되어야 한다.
- SNI 인증서에 관한 정보
 - 제품에 관한 정보, 그리고
 - SPPT SNI의 유효기간
- (4) 기관장은 제(2)항에 언급된 SPPT SNI와 전자 마크를 SIINas를 통해 전자적으로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제36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규정한 SPPT SNI 발급 신청 절차는 SPPT SNI의 갱신 신청 절차에도 준용한다.

제37조

- (1) SNI 마크 및 전자 마크의 부착 방식은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SNI 인증 체계에 따른다.
- (2) 제(1)항에 언급된 강철제 LPG 용기의 SNI 인증 체계는 본 장관령 별지 1에 명시하며, 해당 첨부는 본 장관령의 불가분의 일체로 구성된다.

제4부
사후관리 (심사)

제38조

- (1) 제26조 제(1)항에 따라 SNI 인증서를 발급한 LSPro는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2) 제(1)항에 언급된 사후관리는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로 시행한다.
- (3) 제(2)항의 정기 사후관리는 매년 1회 실시한다.

- (4) 제(2)항의 비정기 사후관리는 다음의 경우 실시된다.
- 개인, 일반 국민, 기관 및/또는 단체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경우, 또는
 - 산업부 장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 (5) 제(3)항의 정기 사후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LSPro는 해당 산업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체에 사후관리 일정에 대해 사전 통보해야 한다.

제39조

- LSPro는 정기 사후관리 및 비정기 사후관리의 결과를 SIINas를 통해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항에 언급된 보고서에는 최소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후관리 시행일
 - 검사자 성명
 - 샘플 채취자 성명
 - 사후관리 수행 결과, 그리고
 - 시험 결과 보고서 번호 및 일자
- 기관장은 정기 및 비정기 사후관리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 제(3)항에 따른 정기 사후관리의 평가를 위해 기관장은 산업 표준의 제정, 시행 및 적용을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 제(3)항에 따른 비정기 사후관리의 평가를 위해 기관장은 평가팀을 구성한다.
- 제(5)항의 평가팀은 최소한 다음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기관 소속 공무원
 - 산업표준감시 공무원(PPSI)
-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업 표준의 수립, 적용 및 시행에 대한 직무와 기능을 가진 담당 부서와 팀은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LSPro가 제출한 보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 사후관리 절차가 본 장관령의 규정에 따라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담당 부서와 팀은 평가 결과 보고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제40조

- 제39조 제(8)항에 언급된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라 사후관리 관련 문서 및 절차가 본 장관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기관장은 인증기관(LSPro)에게 소명, 수정 및/또는 문서 보완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발급한다.

- (2) 제(1)항에 언급된 통지서는 SIINas(국가표준정보시스템)를 통해 전자적으로 송부된다.
- (3) 제(1)항에 언급된 인증기관(LSPro)은 통지서가 송부된 날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소명, 수정 및/또는 문서 보완을 해야 한다.
- (4)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 인증기관(LSPro)이 제(3)항에 언급된 기한 내에 소명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 b. 인증기관(LSPro)이 본 장관령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 평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문서 보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기관장은 인증기관(LSPro)에게 SNI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명령한다.

제41조

- (1) 제39조 제(8)항에 언급된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라 사후관리 관련 문서 및 절차가 본 장관령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기관장은 사후관리에 대한 적합성 평가 이행에 대하여 유효성 검증을 실시한다.
- (2) 제(1)항에 언급된 유효성 검증은 SIINas(국가표준정보시스템)를 통해 전자적으로 수행한다.

제42조

제38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인증기관(LSPro)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부과한다.

제43조

- (1) SNI 인증서 발급 신청 시, 산업기업이 상표 등록 증명서 및/또는 품질경영시스템 적용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LSPro는 제2차 사후관리 수행 시 산업기업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a. 상표 등록 증명서를 대체할 상표 인증서, 및 또는
 - b. 품질경영시스템 적용 서약서를 대체할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제출.
- (2) 제(1)항의 사후관리 시점에 산업기업이 상표 인증서 및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LSPro는 해당 SNI 인증서를 취소한다.

제44조

- (1) 사후관리 시행 절차는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SNI 인증 체계를 기준으로 한다.

- (2) 제(1)항에 언급된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SNI 인증 체계는 본 장관령에 첨부1에 명시하며, 해당 첨부는 본 장관령의 불가분의 일체로 구성된다.

제4장
책임

제45조

- (1) 제29조 제(1)항 a호에 따른 산업기업이 자사 상표로 강철제 LPG 용기를 제조 및 유통하는 경우, 본 장관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SNI 의무 적용 규정에 부합하도록 강철제 LPG 용기 생산물의 품질 보증에 대한 책임을 진다.
- (2) 제29조 제(1)항 b호에 따른 공식 대리인이 해외 제조업자의 상표로 강철제 LPG 용기를 유통하는 경우, 본 장관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SNI 의무 적용 규정에 부합하도록 강철제 LPG 용기의 품질 보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6조

위탁 생산 계약(Maklun)이 존재하는 경우,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책임은 SNI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 a. 산업 기업이 제조하여 공장에 보관중인 강철제 LPG 용기의 품질 보증 책임은 위탁을 받은 산업회사에 있다.
- b. 상표 협력 또는 위탁 생산 계약을 수령한 해외 제조업자의 제품으로, 공식 대리인이 관리하는 창고 내에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해서는 해당 공식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 c. a호 및 b 호에서 정한 장소를 벗어나 유통중인 강철제 LPG 용기의 경우, 그 책임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제29조 제(2)항 a호에 따른 위탁 계약 제공 사업자
 2. 제29조 제(2)항 b호에 따른 위탁 계약 제공자인 해외 제조업자의 국내 공식 대리인

제5장
확인서 발급 절차

제47조

- (1) 제4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SNI 의무 적용 제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신청은 SIINas를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한다.
- (3) SIINas 페이지에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한다.
- a. 다음 사항을 입력한다.
 1. HS 코드 (품목분류코드)
 2. 제품 기술서
 3. 제외 대상 품목의 규격 및 기준 표준
 4. SNI 번호
 5. 용도 또는 필요성, 그리고
 6. 수입물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
 - b. 강철제 LPG 용기 제품의 인증 및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 선택한다. 그리고
 - c.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다.
 1. 회사 설립 등기 및 변경사항 사본
 2. 사업 허가증
 3. 강철제 LPG 용기 제품이 의무 적용 사항과 상이한 기준, 범위, 분류 및/또는 품질 요건을 가진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업자의 날인된 서약서
 4. 제품 사진, 그리고
 5. Mill 증명서
- (4) 제(3)항 b호의 기관은 장관이 LSPro로 지정한 기관이어야 한다.

제48조

- (1)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근거로, 제47조 제(4)항의 기관은 다음을 평가한다.
- a. 제47조 제(3)항 a호에 따른 입력 사항 적합성
 - b. 제47조 제(3)항 c호에 따른 문서의 완전성 및 적합성
- (2) 제(1)항 a호 및 b호에 따른 평가는 필요시 생산 현장 직접 점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 (3) 제(2)항의 생산현장 직접 점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a. 신청서에 기재된 제품 설명과 품질관리 데이터의 적합성 확인

b. 필요시 시험 샘플 채취

제49조

- (1) 제48조 제(3)항에 따른 생산현장 직접 점검은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인력이 수행한다.
- (2) 제48조 제(3)항 b호에 따른 시험 샘플은 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시험한다.
- (3) 제(1)항의 기관 인력은 현장 점검 치/또는 시험 성적서에 근거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제50조

- (1) 제47조 제(4)항의 기관은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 (2) 평가 결과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a. 점검일자
 - b. 점검자의 성명
 - c. 데이터 및 문서 점검 결과
 - d. HS코드 (품목분류코드)
 - e. 제품 기술서
 - f. 제외 대상 품목의 규격 및 기준 표준
 - g. 평가 결과에 대한 권고
- (3) 평가 과정에서 시험 샘플을 채취한 경우, 제(2)항 외에 평가 결과서에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a. 현장 점검 일자
 - b. 사용된 시험 기관
 - c. 시험 성적서
 1. SNI 번호 및 명칭
 2. 샘플 접수일
 3. 시험 일자
 4. 시험 결과
- (4) 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SIINas를 통해 기관장에게 전자적으로 제출한다.

제51조

- (1) 기관장은 제50조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근거로 본 규정에 따른 절차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 (2) 기관장은 제(2)항의 검토를 위해 산업부 내에서 강철제 LPG 용기 산업에 대한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을 지정한다.
- (3) 제(1)항의 검토는 평가 결과가 완비되어 제출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수행한다.

- (4) 제(1)항의 검토 결과 평가 결과가 완비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관장은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SNI 의무 적용 제외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52조

- (1) 제51조 제(1)항의 검토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기관장은 해당 기관에 대해 소명을 요구한다.
- (2) 제(1)항의 요구는 SIINas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한다.
- (3) 기관은 제(2)항의 요구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소명을 제출해야 한다.
- (4) 국장은 제(3)항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다.
- (5) 제(4)항의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장은 SNI 의무 적용 제외 확인서를 발급한다.
- a. 본 규정에 따른 평가 절차가 적절하게 시행된 경우
 - b. 기관이 부적합 사항을 시정한 경우
- (6) 제(4)항의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장은 SNI 의무 적용 제외 확인서 발급을 거부한다.
- a. 제(3)항의 기한 내 소명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 b. 소명은 제출하였으나, 본 규정에서 정한 적합성 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5장
확인서 발급 절차

제53조

- (1) 기관장은 제51조 제(4)항 및 제52조 제(5)항에서 언급한 확인서를 사업자에게 SIINas를 통해 전자 송부한다.
- (2) 기관장은 제52조 제(6)항에서 언급한 거부서를 사업자에게 SIINas를 통해 전자 송부한다.

제54조

- (1) 제53조 제(2)항에서 언급한 확인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사업자의 성명
 - b. 사업 분야

- c. 사업자의 소재지
- d. 관세분류번호
- e. 제품 기술서
- f. 제외 대상 품목의 규격 및 기준 표준

(2) 제(1)항에서 언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제55조

제47조부터 제54조까지 언급한 확인서 발급 절차는 본규정의 별지2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본 규정의 불가분의 일체로 구성된다.

제6장
기타 규정

제56조

- (1) 해외 제조업자가 생산한 강철제 LPG 용기는 유통 또는 소유권 이전 전에, 제11조 제(2)항 c호에 따라 공식 대리인이 관리하는 창고에 반입/보관되어야 한다.
- (2) 제(1)항에 언급된 강철제 LPG 용기의 반입은 기술 검증 또는 기술 조사를 수반하여 수행한다.
- (3) 제(2)항에 언급된 검증 또는 기술 조사는 수입 문서에 명시된 배송 주소와 제(1)항에 명시된 공식 대리인이 관리하는 창고 주소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 (4) 제(3)항에 언급된 검증 또는 기술적 조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된다.

제57조

SNI 인증서 및/또는 SPPT SNI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이미 생산되었거나 수입된 강철제 LPG 용기는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불용품으로 선언될 때까지 유통될 수 있다.

- a. 국내 생산품인 경우, SNI 인증서 및 SPPT SNI의 유효기간 내에 생산된 제품일 것
- b. 수입품인 경우, SNI 인증서 및 SPPT SNI의 유효기간 내에 세관 절차가 완료되었을 것, 그리고
- c. 제품의 품질이 본 장관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58조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SNI의 의무 적용에 대한 사후관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된다.

제59조

SIINAS 계정을 보유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된다.

제60조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 a. LSPro 및 시험기관이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 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SNI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산업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자의 공식 대리인이 부담한다.
- b. 기관에 의한 검사 활동 비용은 SNI 적용 제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사업자가 부담한다.

제7장
경과 규정

제61조

- (1) 산업부 장관령 제47/M-IND/PER/3/2012호 액화석유가스(LPG)용 강철 용기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의 의무 적용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발급된 강철제 LPG 용기 SNI 마크 사용 제품인증서로서 현재 유효한 것은 본 장관령에 따른 SNI 인증서 및 SPPT SNI로 간주한다.
- (2) 제(1)항에 언급된 강철제 LPG 용기의 SNI 마크 사용 인증서는 본 장관령 시행일로부터 가산하여 최대 1년 이내에 본 장관령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제62조

- (1) 산업부 장관령 제47/M-IND/PER/3/2012호 액화석유가스(LPG)용 강철 용기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의 의무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SNI 마크가 부착된 강철제 LPG 용기는 전자 마크 부착 의무에서 제외된다.
- (2) 제(1)항에 명시한 국내 생산 강철제 LPG 용기 중 본 장관령 시행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에 생산된 제품은 불용품으로 선언될 때까지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될 수 있다.
- (3) 제(1)항에서 언급한 수입 강철제 LPG 용기 중 본 장관령 시행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에 통관 의무를 완료한 것은 불용품으로 선언될 때까지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될 수 있다.

제63조

- (1) 본 장관령 시행일 이전에 SNI 마크 사용 제품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적합성 평가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본 장관령에서 정한 적합성 평가 절차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제8장
종결 규정

제64조

본 장관령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다음 규정은 폐지되고 효력을 상실한다.

- a. 산업부 장관령 제47/M-IND/PER/3/2012호 액화석유가스(LPG)용 강철 용기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의 의무 적용에 관한 규정 (2012년 인도네시아 국가관보 제297호),
- b. 산업부 장관령 제35호(2019년) 철강 및 케이블 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의 의무적 적용에서의 예외 부여를 위한 기술적 검토 발급에 관한 규정」(2019년 인도네시아 국가관보 제1236호) 중 강철제 LPG 용기에 관한 규정,
- c. 산업부 장관령 제47/M-IND/PER/3/2012호 액화석유가스(LPG)용 강철 용기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의 의무 적용에 관한 규정 (2012년 인도네시아 국가관보 제297호)의 시행규정.

제65조

이 장관령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모든 국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본 장관령을 「인도네시아 국가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할 것을 명한다.

2024년 11월 13일
자카르타에서 제정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산업부 장관

서명

아구스 구미왕 까르따사스미따

2024년 11월 20일
자카르타에서 공포됨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무인권부 법령국장 직무대행

서명

아셉 N. 블리야나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858호 [2024년]

Salinan sesuai dengan aslinya
Sekretariat Jenderal
Kementerian Perindustrian
Kepala Biro Hukum,



Ikana Yossye Ardianingsih
(원본과 일치하는 사본임
인도네시아 공화국 산업부 사무총국
법무국장)

이까나 요시에 아르디아닝시)

별지 1

액화석유가스용 강철 용기 국가 표준 의무 적용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산업부 장관령 제66호 [2024년]

액화석유가스용 강철 용기 국가표준 인증 체계

A. 적용 범위

본 인증 체계는 액화석유가스용 강철 용기에 대한 국가표준(SNI) 의무적용을 위해 최초 인증, 사후관리(Surveilen), 및 재인증을 대상으로 한다.

B. 준거 문서

본 체계의 준거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용 강철 용기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SNI 1452:2011
2. 산업부 장관령 제45호(2022년) 산업 표준화에 관한 규정.

C. 인증 절차

인증 절차는 제5형 인증 체계를 적용한다.

D. 인증 단계

인증의 시행은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

No.	조건/규정	상세 설명					
1단계: 선발							
1.	신청/요청	<p>a. SIINas를 통해 전자적으로 진행된다.</p> <p>b. SIINas에서, 산업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자는 공식 대리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를 이행해야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산업 기업</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공식 대리인</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10px;"> 1) 입력 양식을 작성하여 (정보)데이터를 입력한다, 2) 적합성 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SNI를 선택한다, 3)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LSPro(제품인증기관)를 선택한다, 4)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서 발급한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상표 인증서를 첨부하여 상표의 소유권을 증명한다. 그리고 5) 다음 각 항목의 기타 첨부 문서를 첨부(업로드)한다, </td> <td style="padding: 10px;"> a)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산업기업 대표가 서명한 신청서, b) 산업기업 설립 등기부등본 및 그 변경에 대한 사본, c) KBLI 25120 범위에 해당하는 강철제 LPG 용기 제조업 범위의 사업 허가증 d)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td> </tr> <tr> <td style="padding: 10px;"> a)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공식 대리인 대표가 서명한 신청서, b) 해외 제조업자의 설립 등기부등본 및 그 변경에 대한 사본, c) 액화석유가스용 강철 용기 제조업 범위의 사업 허가증 또는 현지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d)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td> </tr> </tbody> </table>	산업 기업	공식 대리인	1) 입력 양식을 작성하여 (정보)데이터를 입력한다, 2) 적합성 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SNI를 선택한다, 3)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LSPro(제품인증기관)를 선택한다, 4)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서 발급한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상표 인증서를 첨부하여 상표의 소유권을 증명한다. 그리고 5) 다음 각 항목의 기타 첨부 문서를 첨부(업로드)한다,	a)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산업기업 대표가 서명한 신청서, b) 산업기업 설립 등기부등본 및 그 변경에 대한 사본, c) KBLI 25120 범위에 해당하는 강철제 LPG 용기 제조업 범위의 사업 허가증 d)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a)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공식 대리인 대표가 서명한 신청서, b) 해외 제조업자의 설립 등기부등본 및 그 변경에 대한 사본, c) 액화석유가스용 강철 용기 제조업 범위의 사업 허가증 또는 현지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d)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산업 기업	공식 대리인						
1) 입력 양식을 작성하여 (정보)데이터를 입력한다, 2) 적합성 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SNI를 선택한다, 3)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LSPro(제품인증기관)를 선택한다, 4)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서 발급한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상표 인증서를 첨부하여 상표의 소유권을 증명한다. 그리고 5) 다음 각 항목의 기타 첨부 문서를 첨부(업로드)한다,	a)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산업기업 대표가 서명한 신청서, b) 산업기업 설립 등기부등본 및 그 변경에 대한 사본, c) KBLI 25120 범위에 해당하는 강철제 LPG 용기 제조업 범위의 사업 허가증 d)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a)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공식 대리인 대표가 서명한 신청서, b) 해외 제조업자의 설립 등기부등본 및 그 변경에 대한 사본, c) 액화석유가스용 강철 용기 제조업 범위의 사업 허가증 또는 현지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d)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No.	조건/규정	상세 설명
	e) SNI 인증서와 SPPT SNI를 취득하기 전까지 강철제 LPG 용기를 유통, 판매 및/또는 양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로,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산업기업 대표가 서명 및 인지를 부착한 서약서	e) SNI 인증서와 SPPT SNI를 취득하기 전까지 강철제 LPG 용기를 유통, 판매 및/또는 양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로,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공식 대리인의 대표가 서명 및 인지를 부착한 서약서,
	f) 생산 공정 절차	f) 생산 공정 절차
	g) 상표를 포함한 유형/모델, 종류를 포함한 강철제 LPG 용기 제품 정보	g) 상표를 포함한 유형/모델, 종류를 포함한 강철제 LPG 용기 제품 정보,
	h) 생산 설비 목록	h) 생산 설비 목록
	i) 시험 장비 목록	i) 시험 장비 목록,
	j)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의 품질 관리 목록,	j)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의 품질 관리 목록,
	k) SNI 마크 부착에 대한 도해(그림 설명)	k) SNI 마크 부착에 대한 도해(그림 설명)
	l) ISO 9001:2015에 따른 문서화된 정보 목록,	l) ISO 9001:2015에 따른 문서화된 정보 목록
	m) 조직도, 그리고	m) 조직도, 그리고
	n) 사업 프로세스,	o) 사업 프로세스, 공식 대리인 요건 충족을 위한 법적 서류는 다음과 같다, i. 회사 설립 및 변경에 대한 등기 사본, ii. 사업 협약증, iii.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적 관할 내에 소재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식 대리인 임명 증명서.

		<p>iv. 해외 제조업자가 상표권자로 공식 대리인에게 부여한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 등록된 계약서,</p> <p>v. 해외 제조업자가 상표권자로 공식 대리인에게 부여한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의 등록 증명서로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서 발급한 증명서, 그리고</p> <p>vi. 공식 대리인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근 시/군에 창고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산업기업이 위탁 생산 계약을 목적으로 SNI 인증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위탁 생산 계약을 수득하는 산업기업은 다음과 같은 추가 문서를 첨부(업로드)해야 한다,</p> <p>a.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가 산업기업이 아닌 기타 사업자인 경우.</p>	<p>해외 제조업자가 위탁 생산 계약을 목적으로 SNI 인증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위탁 생산 계약을 수득하는 해외 제조업자는 공식 대리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추가 필요 서류를 첨부(업로드)해야 한다,</p> <p>a.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가 산업기업이 아닌 기타 사업자인 경우.</p>

	<p>1)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의 회사 설립 및 변경에 대한 등기 사본,</p> <p>2)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의 사업 허가증,</p> <p>3)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가 소유한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상표 인증서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서 발급한 등록증,</p>	<p>1)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의 회사 설립 및 변경에 대한 등기 사본,</p> <p>2)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의 사업 허가증,</p> <p>3)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가 소유한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상표 인증서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서 발급한 등록증,</p>
	<p>4)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가 위탁 생산 계약 수혜자에게 부여한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 등록된 계약서,</p> <p>5)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가 위탁 생산 계약 수혜자에게 부여한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등록 증명서로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 총국에서 발급한 증명서,</p> <p>6) SNI 인증서와 SPPT SNI를 취득하기 전까지 강철제 LPG 용기 제품을 유통, 판매 및/또는 양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로,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가 서명 및 인지를 부착한 서약서,</p>	<p>4)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가 위탁 생산 계약 수혜자에게 부여한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 등록된 계약서,</p> <p>5)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가 위탁 생산 계약 수혜자에게 부여한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등록 증명서로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 총국에서 발급한 증명서,</p> <p>6) SNI 인증서와 SPPT SNI를 취득하기 전까지 강철제 LPG 용기 제품을 유통, 판매 및/또는 양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로,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가 서명 및 인지를 부착한 서약서,</p>

	<p>7) 위탁 생산 계약 수혜자인 산업기업이 보유한 유효한 SNI 인증서, 또는</p> <p>b.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가 해외 제조업자가 아닌 기타 해외 사업자인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p> <p>1)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의 회사 설립 등기부등본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본,</p> <p>2)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가 보유한 사업 허가증 또는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p>	<p>7) 위탁 생산 계약 수혜자인 해외 제조업자가 보유한 유효한 SNI 인증서, 또는</p> <p>b.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가 해외 제조업자가 아닌 기타 해외 사업자인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p> <p>1)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의 회사 설립 등기부등본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본,</p> <p>2)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가 보유한 사업 허가증 또는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p>
	<p>3)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가 소유한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 제품에 대한 상표 인증서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서 발급한 확인서,</p> <p>4)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가 위탁 생산 계약 수혜자에게 부여한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 등록된 계약서,</p>	<p>3)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가 소유한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 제품에 대한 상표 인증서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서 발급한 확인서,</p> <p>4)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가 위탁 생산 계약 수혜자에게 부여한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 등록된 계약서,</p>

	<p>5)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가 위탁 생산 계약 수혜자에게 부여한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등록 증명서로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 총국에서 발급한 증명서,</p> <p>6) SNI 인증서와 SPPT SNI를 취득하기 전까지 강철제 LPG용기 제품을 유통, 판매 및/또는 양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로,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가 서명 및 인지를 부착한 서약서,</p> <p>7) 위탁 생산 계약 수혜자인 산업기업이 보유한 유효한 SNI 인증서, 그리고</p> <p>8)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의 공식 대리인 요건 충족을 위한 다음 증명서류,</p>	<p>5)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가 위탁 생산 계약 수혜자에게 부여한 6클래스 강철제 LPG 용기에 대한 상표 라이선스 계약 등록 증명서로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서 발급한 증명서,</p> <p>6) SNI 인증서와 SPPT SNI를 취득하기 전까지 강철제 LPG 용기 제품을 유통, 판매 및/또는 양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로,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가 서명 및 인지를 부착한 서약서,</p> <p>7) 위탁 생산 계약 수혜자인 해외 제조업자가 보유한 유효한 SNI 인증서, 그리고</p> <p>8) 위탁 생산 계약 제공자의 공식 대리인 요건 충족을 위한 다음 증명서류,</p>
	<p>a) 회사 설립 및 변경에 대한 등기 사본,</p> <p>b) 사업 허가증,</p> <p>c) 인도네시아 법적 관할 내에 소재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식 대리인 임명 증명서,</p>	<p>a) 회사 설립 및 변경에 대한 등기 사본,</p> <p>b) 사업 허가증 사본,</p> <p>c) 인도네시아 법적 관할 내에 소재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식 대리인 임명 증명서,</p>

	d) 해외 제조업자가 상표권자로 공식 대리인에게 부여한 강철제 LPG 용기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 등록된 계약서,	d) 해외 제조업자가 상표권자로 공식 대리인에게 부여한 강철제 LPG 용기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 등록된 계약서,
	e) 해외 제조업자가 상표권자로 공식 대리인에게 부여한 강철제 LPG 용기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의 등록 증명서로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서 발급한 증명서,	e) 해외 제조업자가 상표권자로 공식 대리인에게 부여한 강철제 LPG 용기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의 등록 증명서로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서 발급한 증명서,
	c. 기관장은 산업기업 또는 공식 대리인이 첨부(업로드)한 신청서 기재사항 및 서류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d. 검토 결과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기관장은 SIINas를 통해 산업기업 또는 공식 대리인에게 확인(소명) 및/또는 서류 보완을 요청한다.	

	<p>e. 산업기업 또는 공식 대리인은 기관장의 요청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확인(소명) 및/또는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p> <p>f. 산업기업 또는 공식 대리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확인(소명) 및/또는 서류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SNI 인증서 발급 신청은 무효로 간주된다.</p> <p>g. SNI 인증서 발급 신청서의 기재 내용과 서류가 적합하고 완전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관장은 SIINas를 통해 해당 내용을 LSPro에 전달한다.</p> <p>h. LSPro가 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추가 서류를 요구할 경우, 산업기업 또는 공식 대리인은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LSPro에 제출해야 한다.</p> <p>참고:</p> <p>a. 자체 보유 상표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상표 인증서의 소유자가 산업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자와 동일한 경우,2) 상표 인증서의 소유자가 회사 설립 등기에 명시된 경우(산업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자)3) 상표 인증서의 소유자와 SNI 인증 신청 회사가 동일한 다국적 기업의 일부인 경우, 또는4) 상표가 원 소유자로부터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된 경우 (산업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자)5) 상표 인증서의 소유자와 SNI 신청인이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일 것, 또는6) 제5항에 따른 경우, 상표 인증서 명의자의 주주 중 1인이 SNI 인증서 신청 회사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p>b. 산업기업이 SNI 인증서 발급 신청시 ISO 9001:2015 품질관리시스템의 이행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산업기업은 제2차 사후관리 시점까지 ISO 9001:2015 품질관리시스템 인증서를 보유해야 한다.</p>
--	--

		<p>c. 산업기업이 SNI 인증서 발급 신청시 상표 등록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산업기업은 제2차 사후관리 시점까지 상표 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한다.</p> <p>d. 공식 대리인의 경우 제(5)항 b호 및 c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다음 기준에 따라 2부를 업로드(첨부)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인도네시아 산업/경제 담당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공증을 받은 원본 1부2) 공인 번역사가 번역한 인도네시아어 번역본 1부 <p>e. 공식 대리인의 경우, 제(5)항의 f), g), h), i), j), l), m), n)에서 정한 서류는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해야 한다.</p> <p>f.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는 다음 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KAN(인도네시아 국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기관, 또는2) 국제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인정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품질관리시스템 인증 기관				
2.	적용된 품질 관리 시스템	적용되는 품질경영시스템(SMM) ISO 9001:2015 또는 그 개정판으로 한다.				
3.	심사 기간	<table border="1"><thead><tr><th>산업기업</th><th>해외 제조업자</th></tr></thead><tbody><tr><td>심사 기간의 최소 기준: a. 적합성 심사, 1인/1일 b. 최초 또는 갱신 인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는 4인/1일, 샘플 채취 시간은 제외한다.</td><td>심사 기간의 최소 기준: a. 적합성 심사, 1인/1일 b. 최초 또는 갱신 인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는 6인/1일, 샘플 채취 시간은 제외한다.</td></tr></tbody></table>	산업기업	해외 제조업자	심사 기간의 최소 기준: a. 적합성 심사, 1인/1일 b. 최초 또는 갱신 인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는 4인/1일, 샘플 채취 시간은 제외한다.	심사 기간의 최소 기준: a. 적합성 심사, 1인/1일 b. 최초 또는 갱신 인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는 6인/1일, 샘플 채취 시간은 제외한다.
산업기업	해외 제조업자					
심사 기간의 최소 기준: a. 적합성 심사, 1인/1일 b. 최초 또는 갱신 인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는 4인/1일, 샘플 채취 시간은 제외한다.	심사 기간의 최소 기준: a. 적합성 심사, 1인/1일 b. 최초 또는 갱신 인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는 6인/1일, 샘플 채취 시간은 제외한다.					

		<p>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a. 상기 심사 기간에는 출장 시간 및 격리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b.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자가 샘플 채취를 겸하는 경우, 샘플 채취는 심사 기간 외에 수행한다.c. 심사 및/또는 샘플 채취는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다음 심사 및/또는 샘플 채취를 수행하기 전에 심사자 또는 샘플 채취 담당자는 LSPro의 소재지로 복귀해야 한다.
4.	심사자, 샘플 채취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a. 관련 또는 유사한 분야의 자격을 보유할 것,b.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소유한 자일 것,c. 인도네시아어에 능통할 것,d. 관련 법규를 이해/숙지할 것,e. SIINas를 통해 장관이 등록할 것, 그리고f. 해당 임무를 부여한 LSPro에 등록되어 있을 것.
5.	사용되는 시험기관	<p>사용되는 시험기관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a. 인도네시아 국내 시험기관, 또는b. 국외 시험기관 <p>인도네시아 국내 시험기관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a. 강철제 LPG 용기의 제품의 SNI 적용 범위에 따라 KAN의 인증을 받은 기관, 그리고b. 장관의 지정을 받을 것. <p>참고:</p> <p>강철제 LPG 용기의 적용 범위에 따라 KAN의 인증을 받았다는 의미는 강철제 LPG 용기 제품에 대한 SNI에 명시된 일부 또는 전체 시험절차에 대해 인증을 받았음을 의미한다.</p> <p>국외 시험기관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a. 국제 상호인정협약에 따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인정 기관으로부터 해당 분야에 적합한 인정을 받을 것,b. 해당 시험기관이 위치한 국가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와 기술규제 분야에서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한 국가일 것, 그리고c. 장관의 지정을 받을 것. <p>국내 시험기관의 시험 담당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a. 해당 분야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담당자일 것,b.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국민일 것,c. 인도네시아어에 능통할 것,d. 관련 법규를 이해/숙지할 것, 그리고e. 시험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제2단계: 결정		
1.	1단계 심사 적합성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a. 선발 단계에서 제출한 문서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실시한다.b. 2단계 심사(적합성 심사)를 수행할 팀 또는 팀의 대리인이 수행한다.c. 행정 문서 검토를 수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d. 다음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된 품질경영시스템 관련 추가 문서를 검토한다.<ul style="list-style-type: none">1) 품질 지침서,2) 품질 계획서,3) 생산 공정 흐름도,4) 최신 내부 심사 보고서,5) 최신 경영 검토 회의 보고서,6) 조직도,7) 사업장 위치 지도,8) 생산 설비 목록,9) ISO 9001:2015 기준에 따른 문서화된 정보 목록,10) 사업 프로세스, 및11)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의 품질 관리 목록.a.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와 문서화된 정보의 정확성과 적합성을 확인한다.b. 최소한의 생산 시설 및 시험 장비(품질관리 장비)를 포함한 생산 공정 시설의 요구사항 층족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한다.

2.	2단계 심사 적합성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a. 2단계 심사(적합성 심사)는 1단계 심사 요구 사항을 충족한 경우에 수행한다.b. 심사자는 샘플채취 담당자가 준비한 심사 계획 및 샘플 채취 계획이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SNI 1452:2011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c. 심사팀의 최소 1명은 액화석유가스용 강철 용기 제품에 대한 전문성(지식)을 보유해야 한다.d. 생산 공정 및 품질 관리, 품질보증에 대한 심사는 액화석유가스용 강철 용기 제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심사자가 수행해야 한다.
3.	심사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a. 품질관리시스템의 적용에 대한 심사는 조직의 모든 기능 및 요소를 대상으로 수행한다.b. 심사는 생산공정이 실제로 가동중일 때 실시하며, 신청된 액화석유가스용 강철 용기 제품 규격 중 하나로 대표할 수 있다.c. 생산 공정 심사 인증을 신청한 제품의 일관성은 생산 현장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생산 평가의 목적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이다,<ul style="list-style-type: none">1)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인력 및 절차,2) 생산 전/후에 제품을 모니터링하고 측정 및 시험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3) 제품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장의 샘플링 및 시험 절차로서, 해당 제품이 요구 사항에 적합함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4) 본 SNI 인증 문서의 F항에 언급된 공정 단계, 매개변수에 따른 생산 공정 관리 여부,5) 공장에서 부적합 제품을 식별하고 분리할 수 있는 능력,d. 심사팀은 신청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산업기업 및 해외 제조업자의 생산 능력에 대한 설비를 검증한다.

4.	심사 시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a. 원자재의 검사b. 국내 산업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자는 최소한 다음과 생산 설비를 보유해야 한다.<ul style="list-style-type: none">1) 성형 설비2) 용접 설비3) 열처리 설비4) 표면처리 설비5) 도장 설비c. 국내 산업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자는 최소한 다음 시험 설비를 보유해야 한다.<ul style="list-style-type: none">1) 수압시험 설비2) 기밀시험 설비(누수)d. 시험 장비의 교정.e. 생산 공정 중 검사(공정 중 품질관리).f. 출고 전 검사(출고 품질 관리).g. 제품 마크 표기 작업.
5.	부적합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a. 주요 부적합<ul style="list-style-type: none">1) 부적합이 제품 품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SNI 1452:2011의 기준에 대해 부적합을 초래하는 경우, LSPro와 산업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자간 합의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 이내의 시정(개선) 기간을 부여한다.2) 품질경영시스템과 관련된 부적합의 경우, 최대 1개월의 시정(개선) 기간이 주어지며, 부적합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b. 경미한 부적합은 품질경영시스템 적용에 불일치가 발견된 때를 의미하며, 산업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자는 시정(개선)조치를 제출해야 하며, 최대 2개월의 시정기간동안 부적합 원인 분석을 포함하여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6.	샘플 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a. 샘플 채취 담당자는 샘플 채취 계획을 수립하고, 심사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b. 샘플은 샘플 채취 담당자가 채취하며, 이에 대한 샘플 채취 조서를 작성하여 심사팀장과 해당 기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p>c. 신청된 액화석유가스용 강철 용기와 동일한 유형에서 무작위로 8개 샘플을 채취하되, 그 중 4개는 시험용으로, 나머지 4개는 기업 보관용으로 구분한다.</p> <p>d. 채취된 샘플은 포장하고, 샘플임을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한 후 봉인하여 보관한다.</p> <p>e. 시험용 샘플은 제조업체가 시험 기관으로 발송해야 한다.</p>
		<p>참고:</p> <p>기업 보관용 샘플은 라벨을 부착한 후 산업기업 또는 공식 대리인의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SNI 인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p>
7.	시험 방법	시험은 SNI 1452:2011에 따라 수행한다.
8.	시험 결과 보고서	시험 결과 및 품질 요건은 SNI 1452:2011의 규정에 따라 기재되어야 한다. 참고: SNI 1452:2011 제7.10에 규정된 최소 비틀림 강도 110kgm은 11kgm으로 정정한다.

3단계: 검토 및 결정

		<p>a. 심사 보고서와 시험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는 검토자는 액화석유가스용 강철 용기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한다.</p> <p>b. 검토자는 심사 보고서 및 시험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다.</p> <p>c. 검토 결과는 액화석유가스용 강철 용기의 SNI 인증서 발급 결정을 위한 권고 자료로 활용된다.</p> <p>d. 시험 결과에 대한 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샘플 시험 결과가 SN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LSPro의 요청에 따라 국내 산업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자에게 시험 결과보고서에 대한 통지서를 발송한다.국내 산업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자가 시정조치를 취한 후 샘플에 대한 재채취가 진행된다.재채취된 샘플은 모든 시험 항목에 대해 재시험을 수행한다.샘플 재채취는 최대 1회에 한한다.샘플 재채취는 LSPro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최대 30일(영업일)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국내 산업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 인증 신청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된다.
1.	심사 보고서 및 시험결과 보고서에 대한 검토	

		<p>6) 재시험 결과가 SN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증 절차는 실패로 간주된다.</p> <p>참고:</p> <p>시험기관과 산업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자간의 모든 시험 및 개선(시정)조치 관련 소통은 반드시 LSPro(제품인증기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p>
2.	인증 결정	<p>LSPro 절차에 따라, 결정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a. SNI 인증서 발급, 또는b. 발급 거부.
3.	SNI인증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a. LSPro는 SNI인증서를 발급하기 전, 적합성 평가 결과를 SIINas를 통해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b. a항에 언급된 적합성 평가 결과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l style="list-style-type: none">1) 적합성 평가 실시 일자,2) 인증 체계 및 적합성 심사 일시 일자,3) 심사자 이름,4) 샘플 채취 담당자의 이름,5) 적합성 사전 심사 및 적합성 심사의 결과,6) 제품의 상표, 종류, 유형/용기 구조를 포함한 제품 설명.7) 사용된 시험기관 명칭.8) 발급 예정인 SNI 인증서의 초안 및 그 부속서9)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험 결과 보고서:<ul style="list-style-type: none">a) SNI 번호 및 명칭,b) 시험 샘플 접수일,c) 시험 실시일,d) 시험 결과 보고서 번호 및 일자, 그리고e) 시험 결과.
		<p>c. 기관장은 LSPro가 제출한 적합성 평가 결과를 검토한다.</p>

	d.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기관장은 산업 표준화 수립, 적용 및 시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한다.	
	e. 평가 결과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기관장은 LSPro에게 소명을 요청한다.	
	f. 기관장의 요청은 SIINas를 통해 전자적으로 전달한다.	
	g. LSPro는 기관장의 요청일로부터 5일(근무일) 이내에 소명을 제출해야 한다.	
	h. LSPro가 1) 정해진 기한 내에 소명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또는 2) 소명을 제출했으나, 이 규정에서 정한 적합성 평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관장은 적합성 평가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SNI 인증서 발급 신청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한다.	
	i. 다음과 같은 경우 1) 검토 결과 적합성 평가가 이 규정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2) LSPro가 부적합 사항에 대해 시정(개선) 조치를 취한 경우, 기관장은 LSPro가 수행한 적합성 평가 이행에 대해 유효성을 부여한다.	
	j. 적합성 평가의 유효성에 대한 증거는 전자 마크 형태로 제공한다.	
	k. 전자 마크는 SIINas에 있는 인증서 정보로 연결되는 전자 링크를 포함한다.	
	l. 전자 마크는 SIINas를 통해 LSPro에게 전자적으로 전달된다.	
	m. 적합성 평가 결과 및 평가보고서에 기초하여, LSPro는 인증서를 발급한다.	
	n. SNI인증서에는 반드시 전자서명이 부착되어야 한다.	
	o. LSPro는 SNI 인증서에 따라 전자 마크를 부착한다.	
	p. SNI 인증서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산업기업의 경우	해외 제조업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기업의 명칭 및 주소 2) 공장 주소 3) 상표 4) 액화석유가스용 강철 용기의 유형/구조 5) SNI 번호 및 명칭 6) SNI 인증서 발급 일자, 그리고 7) SNI 인증서의 유효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외 제조업자의 명칭 및 주소 2) 공장 주소 3) 공식 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4) 공식 대리인이 관리하는 창고의 주소 5) 상표 6) 액화석유가스용 강철 용기의 유형/구조 7) SNI 번호 및 명칭 8) SNI 인증서 발급일자, 그리고 9) SNI 인증서의 유효기간
	<p>q. 위탁 생산 계약이 있는 경우, n호에 명시된 정보 외에도 SNI 인증서에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탁 생산 계약을 제공한 사업자의 이름과 주소, 또는 2) 위탁 생산 계약을 제공한 해외 사업자의 기업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p>r. 산업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자는 하나의 생산지에 대해 하나의 SNI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p>	
	<p>s. 산업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자에게 부여되는 SNI 인증서에는 1개의 상표를 기재할 수 있다.</p>	
	<p>t. 위탁생산 계약이 있는 경우, SNI 인증서는 각 위탁 제공자별로 발급되어야 한다.</p>	
	<p>u. SNI 인증서는 발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p>	
	<p>v. 해외 제조업자는 단 하나의 공식 대리인만을 지정할 수 있다.</p>	
	<p>w. 공식 대리인은 단 하나의 해외 제조업자만 대리할 수 있다.</p>	
	4단계: 라이선스	
1. SPPT SNI 발급 (SNI 사용 승인서)	<p>a. SNI 요건을 충족하고 SNI 인증서를 취득한 액화석유가스용 강철 용기는, 기관장으로부터 SNI 마크 사용 승인을 받은 후 SNI 마크와 전자 표식을 부착해야 한다.</p> <p>b. SNI 마크 사용 승인은 SPPT SNI (SNI 사용 승인서)의 형태로 부여된다.</p>	

	<p>c. SPPT SNI 발급 신청은 산업기업 또는 공식 대리인이 SIINas를 통해 전자적으로 기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p> <p>d. 위탁 생산 계약이 있는 경우, 다음 신청인이 SIINas를 통해 전자적으로 기관장에게 SPPT SNI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위탁 생산 계약을 제공하는 산업기업, 또는2) 위탁 생산 계약을 제공하는 해외 제조업자의 회사 대리인. <p>e. SPPT SNI 발급 신청을 할 때, 산업기업 또는 공식 대리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SIINas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정보를 입력한다,2) 다음의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업로드) 한다,<ol style="list-style-type: none">a) 산업기업의 경우, 생산 능력, 생산률, 생산 계획 및 전년도 생산 실적에 대한 증빙. 또는b) 해외 제조업자의 공식 대리인의 경우, 생산 능력, 수입 계획 및 최근 연간 수입 실적에 대한 증빙.
	<p>f. 위탁 생산 계약이 있을 경우, (1) 절 d호에 따른 SPPT SNI 신청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SIINas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정보를 입력한다.2) 다음의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업로드) 한다,<ol style="list-style-type: none">a) 위탁 생산 계약에 따라 생산될 제품의 수량 증명서. 그리고b) 위탁 생산 계약에 따라 수혜자가 산업기업인 경우 전년도의 생산 실적, 수혜자가 해외 제조업자인 경우 직전 연도 연간 수입 실적에 대한 증빙. <p>g. SPPT SNI 발급을 최초로 신청하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또는 수입 실적 증빙 제출이 면제된다.</p>

	<p>k.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팀은 다음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신청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 간의 일치 여부 점검, 그리고2) 신청한 SNI 마크 사용의 적정성 평가.
	<p>l.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신청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 간의 불일치가 발견되었거나, 및/또는2) SNI 마크 사용과 제출 서류 간의 부적합성이 있을 경우, <p>평가팀은 SPPT SNI 신청자에게 명확한 설명(소명)을 요청한다.</p>
	<p>m. SPPT SNI 신청자는 명확한 설명(소명)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3일(근무일) 내에 소명을 제출해야 한다.</p>
	<p>n. 평가팀은 SPPT SNI 발급 신청을 받은 후 최대 5일(근무일)내에 평가 결과 보고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o. SPPT SNI 신청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신청자가 정한 기간 내에 명확한 설명(소명)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또는2) 신청자가 해당 불일치 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시정)을 하지 못한 경우. <p>기관장은 SNI 마크 사용 승인 신청을 거부한다.</p>
	<p>p. SNI 마크 사용 승인 신청 거부는 SIINas를 통해 전자적으로 통보한다.</p>
	<p>q.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SPPT SNI 마크 사용 승인 신청이 적합하고 서류가 완전하다고 평가된 경우, 또는2) SPPT SNI 신청자가 불일치 또는 부적합한 사항을 개선(시정)한 경우, <p>기관장은 평가팀의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5일(근무일)내에 SPPT SNI를 발급한다.</p>
	<p>r. SPPT SNI 발급시 전자 마크가 포함되어야 한다.</p>
	<p>s. 전자 마크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한 전자 링크가 포함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a. SNI 인증 정보,b. 제품 정보, 그리고c. 발급된 SPPT SNI에 명시된 유효 기간.

		t. SPPT SNI와 전자 마크는 SIINas를 통해 송부된다.						
5단계: 사후관리								
1.	인증 요건 검토	<p>a. LSPro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 요건의 유효성, 2) 제품 품질경영시스템 요건의 충족, 3) 산업기업이 최초 인증시 상표 등록 증명서로 갈음한 경우, 제2차 사후관리 시점까지 상표 인증서를 보유할 것. 4) 산업기업이 최초 인증시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적용 서약서로 갈음한 경우 2차 사후관리 시점까지 ISO 9001:2015 품질관리 시스템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p>b. 사후관리 및 샘플 채취 활동은 매년 1회 실시한다.</p>						
2.	심사 기간 및 샘플 채취 기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산업기업</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해외 제조업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10px;">사후관리 심사를 위한 적합성 심사 최소 소요 기간은 4인/일이며, 샘플 채취 기간은 제외한다.</td> <td style="padding: 10px;">사후관리 심사를 위한 적합성 심사 최소 소요 기간은 6인/일이며, 샘플 채취 기간은 제외한다.</td> </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10px;"> 참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상기 심사 기간에는 출장 시간 및 격리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b.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자가 샘플 채취를 겸하는 경우, 샘플 채취는 심사 기간 외에 수행한다. c. 심사 및/또는 샘플 채취는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다음 심사 및/또는 샘플 채취를 수행하기 전에 심사자 또는 샘플 채취 담당자는 LSPro의 소재지로 복귀해야 한다. </td> </tr> </tbody> </table>	산업기업	해외 제조업자	사후관리 심사를 위한 적합성 심사 최소 소요 기간은 4인/일이며, 샘플 채취 기간은 제외한다.	사후관리 심사를 위한 적합성 심사 최소 소요 기간은 6인/일이며, 샘플 채취 기간은 제외한다.	참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상기 심사 기간에는 출장 시간 및 격리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b.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자가 샘플 채취를 겸하는 경우, 샘플 채취는 심사 기간 외에 수행한다. c. 심사 및/또는 샘플 채취는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다음 심사 및/또는 샘플 채취를 수행하기 전에 심사자 또는 샘플 채취 담당자는 LSPro의 소재지로 복귀해야 한다. 	
산업기업	해외 제조업자							
사후관리 심사를 위한 적합성 심사 최소 소요 기간은 4인/일이며, 샘플 채취 기간은 제외한다.	사후관리 심사를 위한 적합성 심사 최소 소요 기간은 6인/일이며, 샘플 채취 기간은 제외한다.							
참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상기 심사 기간에는 출장 시간 및 격리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b.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자가 샘플 채취를 겸하는 경우, 샘플 채취는 심사 기간 외에 수행한다. c. 심사 및/또는 샘플 채취는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다음 심사 및/또는 샘플 채취를 수행하기 전에 심사자 또는 샘플 채취 담당자는 LSPro의 소재지로 복귀해야 한다. 								
No.	조건/규정	상세 설명						
3.	2단계 심사 적합성 심사	<p>a. 2단계 심사(적합성 심사)는 이전 심사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이 모두 해결된 경우에 진행한다.</p> <p>b. 심사자는 샘플 채취 담당자가 준비한 심사 계획 및 샘플 채취 계획이 SNI 1452:2011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p> <p>c. 심사팀중 최소 1명은 액화석유가스용 강철 용기 제품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해야 한다.</p>						

		d. 생산 공정 및 품질 관리, 품질 보증에 대한 심사는 액화석유가스용 강철 용기 제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심사자가 수행해야 한다.
		e. 심사자는 다음을 충족한다. 1) 해당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할 것, 2)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국적 소유자 일 것, 3) 인도네시아어에 능통할 것, 4) 관련 법령을 숙지할 것, 5) 산업부 장관을 통하여 SIINas에 등록되어 있을 것.
4.	심사 범위	a. 품질경영 시스템 심사는 조직 기능 시스템의 모든 요소에 대해 실시한다. b. 심사는 생산 공정 진행 중에 수행되며, 제안된 액화석유가스용 강철 용기의 유형 및 종류 중 하나 대표로 실시할 수 있다. c. 생산 공정 심사: 인증을 신청한 제품의 일관성은 생산 현장에서 점검해야 하며, 생산 공정에 대한 심사는 다음 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1) 생산 검증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인력 및 절차, 2) 제품 생산 전/후 모니터링, 측정 및 시험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 3) 제품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품의 규격의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장 차원의 샘플 채취와 시험 절차, 4) 본 SNI 인증 체계의 'F' 항에 따른 생산 공정 관리, 그리고 5) 부적합 제품을 식별하고 분리할 수 있는 공장의 능력. d. 심사팀은 산업기업 및 해외 제조업자가 인증을 신청한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품 유형별 생산 능력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역량을 검증한다.
No.	조건/규정	상세 설명
5.	심사시 주의 사항	a. 원자재 검사 c. 산업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자는 최소한 다음 생산 설비를 보유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형 설비 2) 용접 설비 3) 열처리 설비 4) 표면 세정 설비 5) 도장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c. 산업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자는 최소한 다음 시험 설비를 보유, 운영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압 시험 설비 2) 기밀(누설) 시험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d. 시험 장비의 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e. 생산 공정 중 검사(공정중 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f. 출고 전 검사(출고 품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g. 제품 마크 표기 작업.
6. 부적합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주요 부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적합이 제품 품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SNI 1452:2011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LSPro와 산업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자간 합의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개월 이내의 시정(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2) 품질경영시스템과 관련된 부적합의 경우, 최대 1개월의 시정(개선) 기간이 주어지며, 부적합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b. 경미한 부적합은 품질경영시스템 적용에 불일치가 발견된 경우를 의미하며, 산업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자는 시정(개선)조치를 제출해야 하며, 최대 2개월의 시정기간동안 부적합 원인 분석을 포함하여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7. 샘플 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샘플 채취 담당자는 샘플 채취 계획을 수립하고, 심사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b. 샘플은 샘플 채취 담당자가 채취하며, 심사팀장 및 산업기업이 이를 승인한 샘플 채취 보고서를 작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c. 신청된 액화석유가스용 강철 용기 유형과 동일성을 갖는 샘플 8개를 무작위로 채취해야 하며, 그 중 4개는 시험용으로, 나머지 4개는 보관용으로 사용한다.

		d. 채취된 시험용 샘플은 포장하고, 샘플 라벨을 부착하여 봉인해야 한다. e. 샘플은 생산자가 시험기관에 발송해야 한다.
		참고: 보관용 샘플은 라벨을 부착한 후 SNI 인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산업기업 또는 공식 대리인의 사업장에서 보관해야 한다.
8.	시험 방법	시험은 SNI 1452:2011에 따라 수행한다.
9.	시험 결과 보고서	시험 결과 및 품질 요건은 SNI 1452:2011의 규정에 따라 기재되어야 한다. 참고: SNI 1452:2011 제7.10에 규정된 최소 비틀림 강도 110kgm은 11kgm으로 정정한다.
10.	심사 보고서 및 시험결과 보고서에 대한 검토	a. 심사 보고서와 시험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는 검토자는 액화석유가스용 강철 용기 제품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해야 한다. b. 검토자는 심사 보고서 및 시험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다. c. 검토 결과는 액화석유가스용 강철 용기 제품의 SNI 인증서 발급 결정을 위한 권고 자료로 활용된다. d. 시험 결과에 대한 규정, 1) 시험기관에 발송된 샘플에 대한 시험 결과가 SN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LSPro는 산업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자에게 부적합 보고서를 발행한다. 2) 산업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자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샘플을 재채취한다. 3) 샘플의 재채취 후 모든 시험항목에 대해 재시험을 수행한다. 4) 샘플 재채취는 최대 1회에 한한다. 5) 샘플 재채취는 LSPro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산업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자가 30일 (근무일 기준) 이내에 수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품 인증 신청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된다.

		6) 재시험 결과가 SN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증 절차는 실패로 간주된다.
		<p>참고:</p> <p>시험기관과 산업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자간의 모든 시험 및 개선(시정)조치 관련 소통은 반드시 LSPro(제품인증기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p>
11.	인증 결정	<p>LSPro 절차에 따라, 결정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a. SNI 인증서 유지b. SNI 인증서 정지, 또는c. SNI 인증서 취소

E.	<p>마크 표기</p> <p>SNI 마크 및 전자 마크 부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SNI 및 전자 마크는 SNI 1452:2011 기준을 충족하는 액화석유가스(LPG)용 강철 용기에 대한 적합성 증거로 사용된다. 2. SNI 마크와 전자 마크는 산업표준화 기관장이 발급한 SPPT SNI를 통한 SNI 마크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부착한다. 3. SNI 마크와 전자 마크는 모든 액화석유가스(LPG) 강철 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며, 쉽게 훼손되지 않고 식별 및 판독이 용이한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4. SNI 마크는 각 액화석유가스(LPG)용 강철 용기의 핸드가드(Hand Guard) 부분에 스탬핑(stamping) 방식으로 부착한다. 5. 전자 마크는 각 액화석유가스(LPG) 강철 용기의 최초 도장(초기 생산품 또는 유지보수품이 아닌 경우) 단계에서 스크린(sablon) 또는 도장(cat) 방식으로 부착한다. 6. SNI 마크와 전자 마크 외에, 각 액화석유가스(LPG) 강철 용기에는 다음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상표 또는 로고, b. 제조 일련번호, c. 용기 공중량, d. 액화석유가스(LPG) 충전량(순중량), e. 수용수 용적, f. 제조 연월, g. 시험 압력 7. Maklun(위탁생산계약)이 있는 경우, 표시는 위탁자에게 발급된 SNI 인증서에 따른 상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	--

F. 액화석유가스용 강철 용기 제품의 생산 공정 관리

번호	공정 단계	방법	주기	기록
1	원자재	화학성분 검증 및 두께 측정	매 입고 시 롯트 별	검사 문서 및 성분 분석 성적서
2	성형	치수 측정	회사 표준에 따름	성형 공정 검사서
3	원형 용접	전류 조정 및 용접상태 측정	회사 표준에 따름	용접 작업서
4	열처리	온도 조정	회사 표준에 따름	열처리 작업서
5	표면세척	육안 검사	회사 표준에 따름	표면처리 검사서

6	도장	색상 및 표면검사	회사 표준에 따름	도장 검사서
7	품질검사	a. 액화 석유가스 강철 용기 치수 측정, b. 수압 내압 시험 c. 기밀 시험	SNI 1452:2011에 따름	검사 및 시험서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

서명

아구스 구미왕 까르따사스미따



(원본과 일치하는 사본임

인도네시아 공화국 산업부 사무총국

법무국장

이까나 요시에 아르디아닝)

별지 2

액화석유가스용 강철 용기 국가 표준 의무 적용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산업부 장관령 제66호 [2024년]

확인서 발급 절차

A. 적용 범위

액화석유가스용 강철 용기에 관한 SNI 의무 적용의 예외를 위한 확인서 발급 신청은, 기술적 사유에 근거하는 경우로서, 해당 강철 용기가 별도의 표준을 가지고 있으며 그 범위, 분류 및/또는 품질 요건이 LPG 강철 용기에 관한 SNI와 상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B. 심사

1. 신청

1.1 신청은 SIINas를 통해 전자로 신청한다.

1.2 SIINas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a. 신청서식에 다음 사항을 기입한다.

1. 관세분류코드 / HS코드

2. 품목 기술서

3. 예외 신청 대상 제품의 규격 및/또는 기준 표준

4. SNI 번호

5. 용도 또는 필요성

6. 수입 물품의 경우 원산지

b. 액화석유가스용 강철 용기의 인증 및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 선택

c. 다음 서류를 첨부(업로드)해야 한다.

1. 회사의 설립 및 그 변경에 관한 등기부 등본

2. 사업 허가증

3. 액화석유가스 강철 용기가 의무 적용 표준과는 상이한 품질 요건(표준, 적용범위, 분류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한 사업자 서약서 (날인본)

4. 제품 사진

5. mill 증명서 (제조 증명서)

2. 검사 인력

2.1 액화석유가스 강철 용기 심사자와 동등한 수준의 역량을 보유할 것

2.2 샘플 채취원으로서의 역량을 보유할 것

2.3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자일 것

2.4 인도네시아어에 능통할 것

2.5 관련 법령의 규정을 이해할 것

- 2.6 장관에 의해 SII Nas를 통해 심사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
 - 2.7 업무를 부여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을 것
 - 3. 기관
 -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LSPro 등)
 - 4. 시험 기관
 -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
 - 5. 현장 검사 기간
 - a. 현장검사는 샘플 채취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1인/일 동안 수행
 - b. 샘플 채취가 필요한 경우, 현장 검사를 수행한 동일인이 샘플을 채취한다.
- C. 결정
- 1. 평가
 - 1.1 심사 단계에서 입력된 자료와 제출된 서류가 완전한 경우, 기관은 평가를 시작한다.
 - 1.2 기관은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 a. B의 1.2항 a호에 따른 입력 자료의 적합성
 - b. B의 1.2항 c호에 따른 서류의 완전성 및 적합성
 - 1.3 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과 서류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검사 인력을 지정한다.
 - 2. 현장 검사
 - 2.1 현장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원이 생산 현장에서 검사를 수행한다.
 - 2.2 검사원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a. 신청서에 기재된 제품 설명과 제품 품질관리 자료의 적합성 검사
 - b. 필요시 샘플 채취를 수행
 - 2.3 2.2의 a에 따른 제품 품질관리 자료의 적합성 검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a. 원재료부터 최종 완제품 까지의 품질관리 자료
 - b. 제품의 정기 시험 결과
 - 2.4 샘플 채취가 필요한 경우, 검사 인력이 샘플의 수량 및 대표성을 결정한다.
 - 2.5 샘플 채취는 생산현장 및/또는 생산 창고에서 실시한다.
 - 2.6 채취된 샘플은 포장, 샘플 라벨 부착 및 봉인을 해야 한다.
 - 2.7 채취된 샘플은 신청인이 시험기관으로 발송해야 한다.

3. 시험 방법

시험은 SNI 1452:2011에 따라 실시한다.

4. 시험 결과 보고서

시험결과 보고서에는 시험 결과와 품질 요건을 SNI 1452:2011에 따라 기재한다.

D. 검토 및 평가 결과

1. 시험결과 보고서 검토

1.1 시험결과 보고서의 검토는 검사원이 수행한다.

1.2 시험결과 보고서 검토의 적합성 요건: LPG 용량이 1.5kg, 2kg, 2.65kg, 3kg, 4.5kg, 5.5kg, 6kg, 9kg, 12kg, 14kg, 45kg, 50kg인 용기를 제외한 용기를 신청 대상으로 한다.

2. 평가 결과

2.1 평가가 완료된 경우, 기관은 그 결과를 SIINas를 통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제2.1의 평가결과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검사 실시일,
- b. 검사원의 성명,
- c. 자료 및 서류 검사 결과,
- d. HS 코드,
- e. 물품 설명,
- f. 물품 규격,
- g. 평가 결과 (권고사항).

2.3 평가 시 샘플 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제2.2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도 포함하여야 한다.

- a. 현장검사 실시일,
- b. 사용된 시험기관,
- c. 시험결과보고서:
 - 1) SNI 번호 및 제목,
 - 2) 샘플 접수일,
 - 3) 시험 실시일,
 - 4) 시험 결과.

2.4 제2.2.g의 평가결과 권고사항은 다음 중 하나로 한다.

- a. 액화석유가스(LPG) 강철 용기의 SNI 의무 적용 예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적합한 경우,
- b. 해당 신청이 부적합한 경우.

E. 확인서 발급

1. 평가

1.1 기관장은 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검토한다.

1.2 제1.1의 검토를 위하여, 기관장은 산업부 내 액화석유가스(LPG) 강철 용기 산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을 지정한다.

- 1.3 제1.2의 평가는 기관이 평가결과를 완전하게 제출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1.4 제1.1의 평가 결과가 완비되고 적합한 경우, 기관장은 액화석유가스(LPG) 강철 용기의 의무적 SNI 적용 예외 확인서를 발급한다.
 - 1.5 제1.1의 평가 결과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기관장은 기관에 대하여 전자로 SIINas를 통하여 소명을 요구한다.
 - 1.6 제1.5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소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1.7 기관장은 제1.6에 따른 소명 사항을 평가한다.
 - 1.8 제1.7의 평가 결과, 다음의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한다.
 - a) 본 규정에 따른 평가 절차가 이행된 경우,
 - b) 기관이 부적합 사항을 시정한 경우.
 - 1.9 제1.7의 평가 결과, 다음의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을 거부한다.
 - a) 정해진 기한 내에 소명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b) 소명을 제출하였으나 본 규정에 따른 적합성 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결정
 - 2.1 기관장은 제1.4 및 제1.9에 따른 확인서를 사업자에게 SIINas를 통하여 전자로 통지한다.
 - 2.2 총국장은 제1.10에 따른 확인서 발급 거부를 사업자에게 SIINas를 통하여 전자로 통지한다.
 3. 확인서
 - 3.1 확인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사업자 성명,
 - b. 사업 분야,
 - c. 사업자 주소,
 - d. HS 코드 ,
 - e. 물품 설명 ,
 - f. 예외 대상 물품의 규격 및/또는 기준 표준 .

3.2 제3.1의 확인서는 1년간 유효하다.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
서명

아구스 구미왕 까르따사스미따

Salinan sesuai dengan aslinya
Sekretariat Jenderal
Kementerian Perindustrian
Kepala Biro Hukum,

 Ikana Yossye Ardianingsih

(원본과 일치하는 사본임
인도네시아 공화국 산업부 사무총국
법무국장
이까나 요시에 아르디아닝)